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수정 〉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6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수정	3

I. 제안경위

2025년 4월 30일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호 제10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검토의견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수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중 하나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5항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④ (생략)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 ----- -----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재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합의제 특별행정심판위원회¹⁾,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서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현행법은 업무의 난이도 및 공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²⁾.

-
- 1) 행정심판은 행정에 관한 법적 분쟁을 행정청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특별법상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 ⑨ (생략)

해촉사유로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중 하나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일 수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보임.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⁴⁾, 「특별감찰관법」⁵⁾ 등

3) 더인디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실재하기 어려운 이유... ‘심신장애’」 2022.8.16. 보도. (최종검색일: 2025.6.11.)

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생략)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5. (생략)

다른 입법례에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겠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해촉사유를 변경할 경우 해임·해촉 요건에 현행보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5)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생략)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